

부품·소재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및 확인요령

- 산업자원부 -

부품·소재전문기업확인 제도의 운영 방향

- 부품·소재육성정책의 정책대상(policy target)을 부품·소재전문기업으로 명확화

· 부품·소재산업의 발전은 세계적 부품·소재 전문기업의 창출에 있는 만큼 부품·소재전문기업을 정책의 고객으로 인식한다.

- 부품·소재를 생산하는 영세 기업에 대한
image making

· 협력업체 또는 대기업에 종속적으로 인식되었던 부품업체나 소재업체에 대해 「부품·소재전문기업」이란 title을 부여, 동 기업의 대외

적 이미지를 제고한다.

※ 부품·소재전문기업 title 부여 →
명칭의 고유 brand화

부품·소재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

1. 부품·소재종합기술지원

16개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부품·소재 전문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기술자생력의 배양을 지원 한다.

구 분	지 원 내 용
파견 지원	박사급 고급연구인력의 기업현장 상주 파견
기술자문	현장 애로기술의 해결을 위한 기술정보 제공, 출장지원 등
선진기술전수	선진기술 전수를 위한 연구인력의 해외파견 지원

부품 · 소재전문기업은 이 경우 파견된 우수 연구원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(stock option) 부여가 가능하다.

부품 · 소재전문기업의 종업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의 과세 특례(3,00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 · 사업소득에서 제외)

2. 부품 · 소재전문투자조합의 투자 지원

부품 · 소재전문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부품 · 소재전문기업에 대한 기술개발, 시제품생산, 양산라인 도입 등을 위한 유동성 자금을 지원한다.

산업기반기금(100억원)과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(200억원)의 출자를 통해 민간 투자기관들이 약 100억원 규모의 전문투자 펀드 7~10개를 결성할 예정이다.

※ 2002년 중 1000억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될 예정

3. 대학 교수 및 국공립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 제도를 활용, 부품 · 소재전문기업으로 채용 가능

관계 법령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, 3년 이내의 기간으로 대학교수 등도 부품 · 소재전문기업에 근무가 가능하며 복직도 법적으로 보장된다.(부품 · 소재특별조치법 제13조)

또한 대학교수,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등을 부품 · 소재전문기업의 임 · 직원으로 겸임 또는 겸직하게 할 수 있다. (부품 · 소재특별조치법 제14조)

4. 부품 · 소재산업육성 설비자금(산기반기금) 응자 사업 우대

부품 · 소재전문기업이 해당 부품 · 소재를 개발 완료 하였거나 기 생산하고 있는 부품 · 소재의

설비능력 확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투자가 필요한 경우 우대한다.

총 700억원의 규모로 연 5.00%(변동금리)의 금리에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으로 지원(동일인 한도 : 20억원 이내)한다.

5. 부품 · 소재수출Leading Company 선정, 부품 · 소재기술상, 무역의 날 포상, 우수자본재개발자 유공자 시상 등 정부의 포상 대상자로 우선적으로 고려

각종 포상 제도의 수상 대상자로서 부품 · 소재전문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들을 우대하는 시책을 추진한다.

특히, 수출비중이 높거나 수출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들을 Leading Company로 선정하는 「부품 · 소재수출Leading Company 제도」에 부품 · 소재전문기업을 적극 추천한다.

6. 부품 · 소재기술개발사업 및 신뢰성 향상 참여의 기회 제공

부품 · 소재전문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 부품 · 소재기술개발사업 및 부품 · 소재신뢰성 향상사업을 상세히 안내하여 동 기업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며 동기업의 참여 시 우선적 지원 가능성을 검토 한다.

※ 좋은 정부 제도가 있음에도 기업들이 이를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애로 사항 해결

◆ 부품 · 소재전문기업을 Network하여 전문기업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정부지원 프로그램 · 금융 · 세제 · 전시회 · 마케팅 · 기술혁신 등의 종합적 consulting 지원

7. 부품 · 소재산업의 수출확대 및 투자유치와 관련된 정부정책에 우선적 참여 기회 제공

제 1회 한국 부품 · 소재종합전시회 개최시 부품 · 소재전문기업 참가시 우대 조치한다.

부품 · 소재투자유치단 파견 및 대 중국 부품 · 소재시장개척단 파견시 부품 · 소재전문기업 우대한다.

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-호

부품 · 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 · 소재전문기업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부품 · 소재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부품 · 소재전문기업 확인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부품 · 소재전문기업 확인요령

제1조(목적) 이 요령은 부품 · 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 · 소재전문기업의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“신청인”이라 함은 부품 · 소재전문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.
- “증명기관”이라 함은 부품 · 소재전문기업임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및 발급하는 자를 말한다.

3. “추천기관”이라 산업발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단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부품 · 소재전문기업 확인신청)

① 부품 · 소재전문기업(이하 “전문기업”이라 한다)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(이하 “신청인”이라 한다)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품 · 소재전문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(이하 “신청서”라 한다)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1. 별지 제5호 서식의 검토의견서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감사보고서 1부(세무사 · 경영지도사가 확인 · 증명한 경우는 검토의견서, 공인회계사가 확인 · 증명한 경우는 감사보고서)

2.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, 그밖의 신청인은 상법 제447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

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문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부품 · 소재전문기업 확인서(이하 “확인서”라 한다)를 발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부품 · 소재의 실제 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.

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증명기관에 확인 요청한 날부터 이에 대한 회신일까지는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4조(증빙 서류)

- ① 신청인은 제2조의 확인 신청을 위하여 공인 회계사, 세무사, 경영지도사(개업을 신고한 자에 한하며, 이하 “증명기관”이라 한다)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신청인은 제3조제1항제1호의 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증명기관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기업현황조사표(별지 제3호 서식)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
 - 2. 부품 · 소재매출액 명세서(별지 제4호 서식)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
- ③ 본 요령에서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기준은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.

제5조(매출액의 범위 등)

- ① 부품 · 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 치법 제2조제2호의 매출액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것을 말한다.
- ② 부품 · 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 치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자기계열회사의 범위에 동 기업집단의 해외 계열사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.

제6조(확인서의 유효기간) 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.

제7조(확인서 재발급)

-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확인서를 발급받은 전문

기업인 개인사업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사유로 확인서의 재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, 확인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.

1. 업체명 또는 소재지 등 기재사항의 단순 변경을 요하는 경우 (대표자 변경은 제외)
2. 당해사업을 포괄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개인사업자가 신설되는 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
-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확인서를 발급받은 전문기업인 법인이 유효기간중에 업체명, 대표자 또는 소재지 등의 단순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재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확인한 후, 확인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재발급하는 경우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에 발급된 유효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전문기업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등)

- ① 전문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전문기업이 전문기업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도 제4조 각호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의하여 재발급된 전문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.

제9조(사후관리 등)

-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신청서의 검토 과정에서 신청인 또는 확인기관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 등으로 작성되었다고 의심이

가는 경우 신청인, 증명기관 또는 추천기관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하여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.

② 산업자원부장관은 확인서를 발급한 이후 해당 기업이 전문기업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실사 또는 서류조사 등의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③ 산업자원부장관은 현장실사 또는 사후 관리를 통해 다음 각호의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당해 기업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을 아니하거나 이미 발급된 확인서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혼위 또는 위조 등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
2. 증명기관 또는 추천기관이 발급한 서류의 내용과 실제 운영하는 사업이 현격히 다를 경우
3. 부도,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업에게 이를 알려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10조(전문기업 명단비치)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문기업의 명단을 비치하여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

제11조(업무의 위임)

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문기업의 확인을 위하

여 필요한 업무의 일부인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천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1. 전문기업 확인 신청서 접수 및 확인서 재발급에 관한 업무
 2.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업무
 3. 그밖에 전문기업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
-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추천기관이 행하는 제1항의 위임 업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추천기관의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

<부 칙>

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